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-8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0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립예술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과 합창단 관리·운영상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(안 제8조)

-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지휘자, 반주자 및”을 “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함”으로 한다.

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나. 기존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경과조치(부칙 제2조)

- 부칙 제2조 (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재위촉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로 한다.

3. 주요 토의과제

개정조례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(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재위촉에 관한 적용례)를 완화하여 기존 재직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 ~ 8. 17.

☞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주요의견

▶ 마포구의회 신종갑의원 제출 의견[2022. 8. 10.]

- 개정안 경과조치 규정은 표적사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
- ⇒ 경과조치 규정에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규정하고, 현재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 만료 시 재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

▶ 차○○(합창단원) 제출 의견 (2022. 8. 13.)

- 개정되는 부칙을 보면 내년 임기까지 4명의 지휘자·반주자가 해임되는 상황이 되어, 이번 기회에 모든 선생님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됨
- ⇒ 지휘자·반주자는 단원들의 평정과 오디션을 통해 평가 후 재신임 여부 결정

▶ 마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(김○○) 제출 의견(2022. 8. 17.)

- 조례 개정 및 연임제한에 대한 당위성 부재
- 개정 조례의 부칙은 지휘자·반주자의 이전 재직 기간까지 모두 산정되어 조례 적용 시점의 문제가 있음
- 소년소녀합창단원 개개인의 성향과 실력을 파악하고, 공연까지 기간을 고려할 때 지도자가 연속성 있게 합창단을 지도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
- 합창단 지도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임 제한 조치가 아닌 지도인력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재위촉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
- ⇒ 결론적으로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을 폐지 혹은 완화하거나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기존 재직자에게 재위촉 기회를 주기 바람. 전체 합창단에 적용 문제가 있다면 소년소녀합창단만이라도 임기기간 연장 적용하는 별도 부칙 추가 건의

▶ 마포구 구립여성합창단(박○○) 제출 의견[2022. 8. 17.]

- 개정조례 제8조제2항의 연임 횟수 제한은 합창단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임 심사 시 합창단원들의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 - ⇒ 부칙 제2조(기존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경과) 조치는 현 지휘자와 반주자를 해촉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지휘자 및 반주자도 정당한 심사를 거쳐 연임 또는 해촉 절차를 밟아야 함.
- 조례 제7조제1항의1호 ‘구립예술합창단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’를 ‘만 20세 이상 만 57세 이하의 구민’으로 확대 요청
- 합창경연대회 수상 상금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하고 분쟁 없이 사용되도록 해야 함.

👁 마포구 의견

- ⇒ 이익과 관련한 부분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옳으며, 불분명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임
- ⇒ 전문성이 강한 지휘자 및 반주자를 합창단원이 평가·심사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, 합창단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심사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⇒ 조례 제7조 및 수상상금 규정, 소년소녀합창단만이라도 임기 연장 적용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 사안이 아니므로 논의 대상 아님

2) 기획예산과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22.9.1.)

6) 구립합창단 관련 민원제기 사항

- ▶ 마포구립합창단 지휘자의 갑질 및 금품수수 고발(구민에게 들겠습니다, 서울 상담민원)

- 자체 테스트나 결석을 앞둔 특정단원의 선물 제공
(지휘자 해외연주 시 소정의 달러 수수)
- 외모 및 옷차림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농담
- 연습시간에 음악적인 것 외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, 지휘자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비인격적인 막말 등

⇒ 지휘자의 갑질 및 금품수수행위 근절 요청

▶ **마포구립합창단 지휘자의 부당임금 수령 및 방역수칙 위반, 부당 재임용 등 (구민에게 들겠습니다)**

-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원격 화상수업 시 30분 수업 중 잡담은 20분, 수업은 10분하고 사진만 찍는 수업 진행하고 개인사정으로 연습 취소하는 등 수업의 질이 형편 없었음
- 방역지침으로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재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서교, 신도림 등에 대면연습을 하고 재단에는 화상수업 한 것으로 보고
- 마포문화재단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지휘하는 사설합창단연주회에 일부 마포구립합창단원을 세웠으며, 단원 전체를 대학후배 연주에 동원 함
- 지휘자는 합창단원 개개인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단원들의 사적인 사정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, 특정단원에게 픽업을 지시하는 등 개인적인 잡일을 지시하며 지휘자라는 지위를 남용

⇒ 지휘자의 부정행위와 갑질에 대한 무기명 실태조사 실시 요청

⇒ 합창단원의 지휘자 평가제도 도입 요청

⇒ 현 지휘자 포함 공정한 방식의 지휘자 재선발 요청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한다)이”를 “한다)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60명”을 “각 60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구에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달하는 해당년도 12월31일자로”를 “해당하는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면”으로,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지휘자, 반주자 및 단원”을 “단원”으로 한다.

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제4항 중 “예산 사용계획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”를 “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예산을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운영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구립예술합창단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<u>60명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7조(단원 등의 자격) ① 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소년소녀합창단원은 <u>구</u>에 거주하는 초·중·고등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재학생 및 <u>구 소재 학교 학생</u>으로 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상한연령에 <u>달하는 해당년도 12월31일자로</u>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, <u>제2항제1호</u>의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3조(운영) ① ----- ----- <u>한다</u>) <u>은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각 60명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단원 등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해당하는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면</u> ----- ----- <u>제1항제2호</u> ----- -----.</p>

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구립예술
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
대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
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
당시의 임기 만료 후 한 차례
연임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2조(운영)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구립예술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
않음

3. 미첨부 사유

기존 편성된 예산 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한만석
연 락 처	02-3153-8352